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1.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1월 5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7.) 상정, 심사, 의결(원안)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가. 제안이유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한 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협정 주요내용

1)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부담 및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됨(안 제1조).

2) 우리나라의 지원분은 2026년 1조 5,192억원이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증가되고,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안 제2조).

3) 인건비 부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군수비용 부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되, 이 중 현금 지원분은 사업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됨(안 제3조).

4) 우리나라는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이 협정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인건비 부담 배정

금액을 한도로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조).

5) 당사자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함(안 제6조).

6)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안 제7조).

다. 참고사항

1)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2) 예산조치 : 2026년도 및 2030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3) 협정 체결경위

- 2024. 4. ~ 2024. 10. 제1차 ~ 제8차 협의 등
- 2024. 10. 3. 최종 문안 합의
- 2024. 10. 29. 제46회 국무회의 심의
- 2024. 11. 4. 서명(서울)

4) 참고자료 : 특별조치협정을 위한 이행약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송 병 철)

1) 개 요

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개요

일반적으로 ‘방위비 분담’(Defense Burden Sharing)¹⁾이란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맹국이 공동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소요되는 군사적·물질적·경제적 諸 비용의 공정한 배분을 의미함²⁾.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통상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³⁾’(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으로 약칭됨; 이하 “특별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⁴⁾(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라 함)

1) 광의의 방위비 분담(Burden Sharing)은 동맹관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과 책임에 대한 분담이며, 이는 방위비 분담(비용 분담), 역할 분담(국방비 지출 등), 역외 분담(PKO, 해외파병 등), 안보 분담(해외원조 등)을 포괄함. 또한, 협의의 방위비 분담은 동맹국 군대의 ‘주둔비용’에 대한 주둔국의 비용 분담(cost sharing)으로 ‘직접지원(예산지원)’과 ‘간접지원(非예산지원)’으로 분류되며, 이 중 직접지원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지원과 非SMA 직접지원으로 구분되고 전자인 ‘SMA 직접지원’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의 핵심임.

2) 2004년 美 국방부의 공동방위에 대한 방위분담보고서(Report on Allied Contribution to Common Defense), Defense-In-Depth(<https://defenceindepth.co/>) 등 참조

3) 상기 2004년 美 국방부 보고서 등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Defense Burden Sharing)은 일반적으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맹국이 공동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소요되는 군사적·물질적·경제적 제 비용의 공정한 배분을 의미하는 매우 포괄적 의미의 용어이므로, 보다 정확한 명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협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나, 그간 국내적으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라는 명칭으로 고착된 상황임.

제5조⁵⁾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모두 제공하되(SOFA 제5조제2항), 미측이 시설과 구역 외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다(SOFA 제5조제1항)는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제12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은 이전 특별협정의 타결과 발효 지연으로 인해 일부 부작용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현행 제11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해 나가자는 한미 간 공감대 하에서 개시되었음. 이후 총 8차례의 공식 회의를 거쳐 양국 정부는 2024년 10월 2일 특별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함. 이어서, 양국 정부 내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4일 외교부 장관과 주한미국대사에 의해 정식 서명되었고,⁶⁾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비준동의⁷⁾를 위해 2024년 11월 5

4)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임.

5)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5조 ①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It is agre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ar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without cost to the Republic of Korea all expenditures incident to the maintenance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those to be borne by the Republic of Korea as provided in paragraph 2.) ②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It is agre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furnish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without cost to the United States and make compensation where appropriate to the owners and suppliers thereof all facilities and areas and rights of way, including facilities and areas jointly used, such as those at airfields and ports as provided in Articles 2 and 3)

6)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경과 【참고자료 2】 참조

7)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법제처 심사 결과 【참고자료 3】 참조

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제12차 특별협정은 협정 전문(Preamble)과 본문(Articles)으로 이루어져 있음. 협정 전문은 특별협정의 취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문(Articles)은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1차 및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구성 및 비교 >

주요 내용(제11차 협정)	구 분	주요 내용(제12차 협정)
협정 취지	전 문	협정 취지
방위비 분담금 구성 항목 및 이행 책임성·투명성	제1조	방위비 분담금 구성 항목 및 이행 책임성·투명성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규모 및 증가율	<u>제2조</u>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규모, 증가율 및 상한선 (증가율 변경 및 상한선 설정)
방위비 분담금 지원방식	<u>제3조</u>	방위비 분담금 지원방식 (인건비 지급 시기 조정)
각종 조세로부터의 면제	제4조	각종 조세로부터의 면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안녕 증진 노력 및 협정 종료 후 인건비 지급 가능 규정	제5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안녕 증진 노력 및 협정 종료 후 인건비 지급 가능 규정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합동실무단	제6조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합동실무단
유효기간, 경과규정 및 협정 종료 시 사업 이행	<u>제7조</u>	유효기간, <u>11차 협정과의 관계</u> 및 협정 종료 시 사업 이행
문제 발생 시 협의 채널	제8조	문제 발생 시 협의 채널
협정 수정·개정	제9조	협정 수정·개정

제1조는 방위비 분담금 구성 항목과 이행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음. 제2조는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규모, 증가율 및 상한선 관련 사항을, 제3조는 방위비 분담금 지원방

식을, 제4조에서는 각종 조세로부터의 면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5조는 양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안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 그리고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6조는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의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합동실무단 관련 사항을, 제7조는 유효기간, 현행 제11차 협정과의 관계 및 협정 종료 시 사업이행 관련 사항을, 제8조는 문제 발생 시 협의 채널 관련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9조는 협정 수정·개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번 협상에서도 지난 제1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이 동시에 논의되고 합의되었는데⁸⁾ 본래 이행약정은 기관 간 약정으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나, 그 내용상 특별협정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협정문과 사실상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협정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었음.

국회 비준동의 이후 특별협정이 발효되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는 군사건설과 군수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합의서

8) 제9차 특별협정까지는 특별협정 체결 이후, 한·미 국방당국 간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국회에 사후 제출하였음. 제9차 특별협정은 협정문, 2개의 교환각서 및 이행약정서 등 4개의 문서로 구성되었던 것에 비해, 제10차 특별협정 관련 문서는 협정문과 이행약정서 등 2개의 문서로 간소화되었고, 기존 2개의 교환각서에 규정되었던 내용은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에 반영되었음. 제11차 및 제12차 특별협정도 제10차 특별협정과 마찬가지로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등 2개의 문서로 구성됨.

를 별도로 체결함.

제10차 특별협정이 2019년 4월 국회의 동의 이후 동 협정의 이행약정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에 기초한 2019년도 현물 대한민국지원건설 사업 이행합의서」('19.7.3.)와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간의 이행합의서」('19. 10. 22.)를 체결하여 군수분야 및 군사건설 분야 분담비용에 따른 사업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음. 이후 제11차 및 12차 특별협정의 이행약정도 이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⁹⁾하고 있음.

9) 제12차 특별조치협정을 위한 이행약정

제4절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군사건설)

10. 군사건설 집행에 있어 당사자들의 책임은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다.

가.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발효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이행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이 항에서 언급된 이행합의서는 2019년 7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 기초한 2019년도 현물대한민국지원건설 사업 이행합의서」를 대체하며, 기존 이행합의서는 이 이행합의서로 대체되기 전까지 특별조치협정 및 이 이행약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적용된다.

제5절 군수비용 분담

9. 군수비용 분담 집행에 있어 당사자들의 책임은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다.

가.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발효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이행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이 항에서 언급된 이행합의서는 2022년 4월 1일 서울에서 서명된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간의 이행합의서'를 대체하며, 기존 이행합의서는 이 이행합의서로 대체되기 전까지 특별조치협정 및 이 이행약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적용된다.

< 제12차 특별협정 및 별도 체결 합의서 등 >

구분	내용	국회 비준동의	당사자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	방위비분담금 관련 일반사항	국회 비준동의 필요	(韓) 외교부(국방부) (美) 국무부
이행약정 (Implementation Arrangement)	특별협정 실행을 위한 세부 내용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국회 비준동의 불요 특별협정과 함께 제출	(韓) 국방부 국제정책관 (美)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군수분야 이행합의서 (Implementing Agreement)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실행을 위한 군수분야 세부 내용	국회 비준동의 불요 협정비준 이후 별도체결	(韓) 국방부 군수관리관 (美)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
군사건설 분야 이행합의서 (Implementing Agreement)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실행을 위한 군사건설 세부 내용	국회 비준동의 불요 협정비준 이후 별도체결	(韓)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장 (美) 주한미군사령부 공병참모부장

나) 제11차 특별협정 기간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액 및 집행 내역

제11차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이후 특별협정 제8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간 협의체인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해 항목별 배정액이 결정되었음. 인건비는 약 8,300 ~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총 인건비의 최소 85% 이상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제11차 특별협정 기간 중 군사건설 분야 배정액은 소폭 증가 추세이며, 해당연도의 공사계획 및 진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 군수지원 분야 배정액은 매년 소폭 변동되고 있으며, 배정액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 제11차 기간의 항목별 지원내용 및 배정액과 예산·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제11차 특별협정에 따른 항목별 지원 내용 >

구 분	지원방법	내 용
인건비	현금 100%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24년 기준 세출직 근로자 8,340명 / 연 3회 균등분할 지급)
군사건설비	현금 12% (설계·감리비) / 현물 88%	생활관, 창고, 훈련장, 정보작전시설 등 (가족주택, 복지·위락시설 제외) * 현물지원 88%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부가 계약 및 사업 진행
군수지원비	현물 100%	수리 및 정비, 수송, 시설유지, 차량·장비 및 물자구입 등 * 주한미군사가 계약하고 한국 국방부가 계약 승인

< 제11차 특별협정에 따른 '20~'25년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액 및 예산·집행 내역 >

(단위: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정부안)
방위비 분담금	협정액 (전년대비 증가율)	10,389 (0%)	11,833 (13.9%)	12,472 (5.4%)	12,896 (3.4%)	13,463 (4.4%)	14,028 (4.2%)
	예산	10,389	10,389	12,472	10,938	13,886	14,301
	집행	7,452	8,937	10,966	11,669	-	-
① 인건비	배정액	3,144	5,598	5,084	5,130	5,166	5,538
	예산	5,005	5,005	6,008	5,130	5,166	5,538
	집행	3,144	5,598	5,084	5,130	-	-
② 군사 건설	배정액	0 (4,709 이월)	7,061 ('21년배정 4,368 '20년이월 2,693)	7,577 ('22년배정 5,561 '20년이월 2,016)	5,820	6,136	6,909
	예산	3,710	3,710	4,454	3,862	5,632	5,963
	집행	3,307	2,895	3,296	4,011	-	-
③ 군수 지원	배정액	0 (2,536 이월)	3,538 ('21년배정 1,867 '20년이월 1,671)	2,692 ('22년배정 1,827 '20년이월 865)	1,946	2,161	1,676
	예산	1,674	1,674	2,010	1,946	3,088	2,799
	집행	1,001	444	2,586	2,528	-	-

* 제11차 협정이 '21.9월에 발효됨에 따라 '20년 군사건설·군수 항목의 배정액은 '21년과 '22년으로 이월

다) 제12차 특별협정 주요내용

제12차 특별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2026년 지원분 규모는 1조 5,192억원이며¹⁰⁾,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적용하여 증가하도록 함. 아울러, 이러한 연간 증가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음(협정 제2조). 제12차 특별협정 첫 해(2026년) 지원분 총액은 전년(2025년) 대비 8.3%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제10차 특별협정 총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인 8.2%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제11차 특별협정 2021년 총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인 13.9% 보다는 낮은 수준임. 또한, 연간 증가율을 현행 국방비 증가율(11차 특별협정 기간 중 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향후 2%대 전망)을 적용하도록 하여 11차 특별협정 대비 연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상한선(5%) 설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임.

둘째, 협정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임. 단년 협정이었던 제10차 특별협정을 제외하면, 최근 제8~9차 특별협정(각각 5년)과 제11차 특별협정(총 6년)의 유효기간과 유사한 수준임(협정 제2조).

10) 2025년도 방위비 분담금 1조4,028억원 대비 1,164억원이 늘어났음.

셋째, 대한민국의 지원 항목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이하 “군사건설”이라 함) 항목(협정 제3조)으로 구성되며, 이는 방위비 분담금의 기존 지원항목의 틀을 유지한 것입니다.

넷째, 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 신설한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선지급(협정 제5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 12차 특별협정에서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차기 특별협정 협상 및 타결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 가능성과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섯째, 제10차 특별협정에서 신설된 후 제11차 협정에서 공동의장을 국장급으로 상향시키면서 그 참석 범위도 확대한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을 계속 운영함(협정 제6조)으로써 한미 간 방위비 분담 제도 개선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함.

2) 특별협정 본문 조문별 검토

가) 방위비 분담금 구성 항목 및 이행 책임성·투명성(제1조)

□ 방위비 분담금 구성 항목의 타당성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이하 “군사건설”이라 한다) 항목으로 구성된다.	Article I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ar,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as a special measure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a part of the expenditures associated with the stationing of the U.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ategorized into Labor Cost Sharing, Logistics Cost Sharing, and Republic of Korea-Funded Constru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KFC”).

특별협정 제1조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원칙과 함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및 군사건설, 이상 3가지 항목으로 구성¹¹⁾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11)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은 최초 인건비 분담·군수비용 분담·군사건설·연합방위증강사업(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gram)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제 7차 협정 이후 CDIP 항목이 군사건설 부문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건비 분담·군수비용 분담·군사건설 3가지 항목으로 조정됨.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당시 국회는 부대의견에 “정부는 차기협상에 있어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예외적 분담이라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기본취지를 살려 준비태세(Readiness)와 같은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기존 특별협정의 틀과 범위가 유지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정부는 이와 같은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제12차 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구성하는 기존 3개 항목 내에서 협의를 진행토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틀을 지속 유지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보임.

□ 이행 책임성·투명성 제고

특별협정 제1조는 한·미 양측이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그간 국회 등에서 제기해 온 방위비 분담금 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미측에 제안하고 적극 협의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조 당사자는 이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Article I The Parties shall make utmost efforts to enhanc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f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예컨대, 이번 제12차 특별협정 이행약정을 통해,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정부 및 국회 예산 심의 절차에 맞게 사업선정 시기와 절차를 조정하고, 한·미 합동협조단(JCG) 협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군수지원 분야에서는 5개년 추정계획 및 연도별 집행계획 제출 요건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연간 계획된 사업의 변경도 최소화하기로 함. 또한, 매년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하여 사업 품질과 안전관리를 제고하는 데 있어 국방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군사건설로 진행되는 시설의 품질과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범사업(pilot program)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그 외에,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SOFA 합동위원회 차원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고, 그 외 한미 제도개선 관심 사항에 대해 공동 평가를 추진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함.

마지막으로, 국회가 지속 요구해 온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하기로 함.

< 제11차 및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제도개선 요약 >

구분		제11차	제12차	기대효과
인건비	퇴직연금제 도입 촉진	해당 없음	• SOFA 합동위의 퇴직연금제 제안 시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협의 추진	퇴직연금제 도입 촉진
	인건비 지급 시기	• 3회 균등 지급 (4.1/6.1/8.1)	• 3회 균등 지급 유지 / 지급 시기 조정(2.1/4.1/6.1)	미 국내법 변경에 상응한 인건비 지급
군사 건설	배정 및 사업선정	• 5개년 계획, 사업 목록 초안 및 간략한 설명서 제출	• 미측 제출 서류 확대 - 5개년 계획, 당해 및 차년도 사업목록 및 DD1391, 분기·연간 현금집행보고서 등	정부 예산 심의 절차 부합 / 예산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우리측 역할 강화
		• 시행 전년도 11월까지 사업선정	• 시행 전년도 5월까지 사업선정	
		• 합동협조단(JCG)에서 5개년 계획 및 사업목록에 대해 협의	• 합동협조단(JCG)에서의 실질적 협의 강화	
	韓 국방부 건설관리 비용	해당 없음	• 한국 국방부의 건설사업관리 비용으로 현물지원분의 5.1% 사용 명시(기존 3%→ 5.1%)	사업 품질·안전관리 향상
	시범사업 도입	해당 없음	• 군사건설 사업 효율성·품질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pilot program) 도입	사업 효율성·품질 향상 / 우리측 역할 강화
	집행보고서	• 계약서 및 수정 계약서 사본, 분기별 집행보고서 제출	• (현금: 美→韓) 설계·감리 관련 계약서 사본 제출 • (현물: 韓→美) 연간 미지출 보고서 추가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군수 지원	배정액 검토	• 개별 사업목록 제출	• 5개년 추정 계획, 연도별 집행 계획 제출 추가	예측성·투명성 제고
	사업변경 최소화	• 사업 목록이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수정될 수 있음을 인정	• 주한미군사가 사업변경 최소화 노력 • 사업변경이 항목별 배정액 20% 초과 시 합동협조단(JCG) 협의	집행의 효율성·예측성 제고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	• 수리 및 정비용역 대상 미지정 (예외적으로 역외 자산 정비지원)	• 수리 및 정비용역 대상을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한정	분담금 집행 합목적성 제고
	시설유지 용역 개념 구체화	• 시설유지용역 제한사항 별도 未기재	• “기존 시설 전체의 철거 또는 개조”는 시설유지 용역에서 제외	대상 명확화 (準건설 공사 방지)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 의제		• IJWG 의제에 ‘대안적 접근법’ 포함	• ‘대안적(소요형) 체제로의 전환’, ‘특정시설 제공 방안’에 대한 한미 공동 평가 등 구체 과제 포함	주요 제도 개선 관심 사항 지속 논의

나)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규모, 증가율 및 상한선(제2조)

□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적정성

특별협정 제2조는 2026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2025년 대비 1,164억원(8.3%) 증가한 1조 5,19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2조 이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26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 5,192억원이다. 2027년, 2028년, 2029년 및 2030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2027년은 2025년, 2028년은 2026년, 2029년은 2027년, 2030년은 2028년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증가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또한,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Article II This Agreement shall determine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26 through 2030.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26 is 1.5192 trillion Korean Won. The 2027, 2028, 2029, and 2030 contributions shall be determined by increasing the contribution of the previous year by the inflation rate (Consumer Price Index)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using the 2025 rate for the 2027 contribution, the 2026 rate for 2028, the 2027 rate for 2029, and the 2028 rate for 2030. Further, the inflation rate used for any given year shall not exceed five (5) percent.

정부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 규모 1조 5,192억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2차~제12차 특별협정 전년 대비 첫해 인상률 비교 >

(단위 : %)

구분	2차 (1994)	3차 (1996)	4차 (1999)	5차 (2002)	6차 (2005)	7차 (2007)	8차 (2009)	9차 (2014)	10차 (2019)	11차 (2021)	12차 (2026)
인상률	18.2	10.0	8.0	25.6	△8.9	6.6	2.5	5.8	8.2	13.9*	8.3

※ 외교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자료 1)

* 11차 협정이 소급 적용된 2020년은 전년 대비 동결

또한, 2027년 이후 기간(2027년-2030년)에 대해서는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에 전전년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91년 ~ 2024년 방위비 분담금 연도별 증가율* 및 연평균 증가율 >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증가율	-	20.0%	22.2%	18.2%	15.4%	10.0%	10.0%	△13.5%	8.0%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6.2%	4.2%	25.6%	9.0%	11.7%	△8.9%	0.0%	6.6%	2.2%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가율	2.5%	4.0%	2.8%	2.9%	4%	5.8%	1.3%	1.3%	0.7%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증가율	1.0%	8.2%	0.0%	13.9%	5.4%	3.4%	4.4%	4.2%	7.9%

* 미화로 지급한 시기(1991~1998)는 미화 기반으로 증가율 계산 / 달러 및 원화를 혼합하여 지급한 시기(1999~2004)의 경우, 연도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증가율 계산 (계산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 자료: 외교부

제12차 특별협정의 최초년도 총액은 지난 합의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는 제11차 특별협정의 높은 증가율(13.9%)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합의된 협상의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임. 특히, 정부는 제12차 특별협정에서 국방비 증가율(11차 협정기간 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2%대 전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분담금 연간 증가율이 감소되어 협정기간 중 전체 분담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당시 국회는 첫 번째 부대의견에서 “과거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연간 분담금 증가율로 국방비 증가율을 채택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이번 제12차 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이러한 국회 부대의견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국방비 증가율을 대체하는 보다 합리적인 지표로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재도입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됨.

< 제12차 특별협정 방위비 분담금 추계 >

○ 소비자물가지수(12차 특별협정) 적용

(단위: 억원, %)

증가율 지수/평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기간 내 총액 합계	기간 내 총액 증가율 (2025년 대비)
CPI 2.5%	15,192	15,572	15,961	16,360	16,769	79,854	19.5%
CPI 2%	15,192	15,496	15,806	16,122	16,444	79,060	17.2%
CPI 1.5%	15,192	15,420	15,651	15,886	16,124	78,273	14.9%

* 2025년 이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가정 (KDI: 2025년 CPI 2%, 2024년 CPI 2.4% 전망)

○ 국방비 증가율(현행 11차 특별협정) 적용 가정 시

(단위: 억원, %)

증가율 지수/평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기간 내 총액 합계	기간 내 총액 증가율 (2025년 대비)
4% 가정	15,192	15,800	16,432	17,089	17,772	82,285	26.7%
5% 가정	15,192	15,952	16,749	17,587	18,466	83,946	31.6%

* 2025년 이후 평균 국방비 증가율 가정 (2015~2024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5.25%)

또한, 정부는 이번 제12차 특별협정에 제8차 및 제9차 특별협정 당시 반영되었다가 제11차 특별협정에서는 삭제되었던 방위비 분담금의 연도별 증가율 상한선¹²⁾ 규정을 재도입하고 이를 5%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함. 이는 과거 8차 및 9차 협정 당시 증가율 상한선 4%보다는 다소 높으나, 상한선 도입 목적이 향후 큰 폭의 물가상승 시 총액 상승폭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라는 점,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0.5%~5.1%까지 분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미 간 협상 결과로서 적절하게 도출된 의미있는 성과로 보임.

□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의 타당성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은 필요한 만큼의 실제 소요액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항목별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소요형 결정방식’과 분담금 총액을 제공하고 필요한 항목에 사용하도록 하는 ‘총액형 결정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은 총액형을 바탕으로, 미·일 간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은 소요형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음.

일반적으로 총액형 결정방식은 분담금 규모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담금의 산정 근거 및 항목별 지원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알기 곤란하며, 분담금 규모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12) 제8차 특별협정에 따른 2010~2013년 분담금 및 제9차 특별협정에 따른 2015~2018년 분담금의 경우,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그 상한선을 4%로 규정하였음.

<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 비교¹³⁾ >

구 분	장 점	단 점
총액형	- 분담금 총액의 급격한 인상 억제 가능 - 금액 결정시 마찰 최소화 - 피지원국의 융통성 제고 - 적은 규모의 방위비 분담 가능	- 분담금 산정의 타당성 제한 - 분담금의 사용내역 확인 제한 - 분담금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한
소요형	- 분담금 산정의 타당성 확보 가능 - 분담금 산정의 투명성 확보 가능 - 분담금 사용내역 확인 가능	- 필요한 소요를 모두 충족해줌으로써 급격한 총액 인상 가능성 -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협의하여 조정 필요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결정 체계를 소요형 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국회에서도 제11차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시 그 부대의 견으로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과 관련해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교부·국방부 공동으로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0월 4일 외교부·국방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¹⁴⁾를 국회에 제출하였음. 보고서는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체제 전환 시 한미 모두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 행정 소요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를

13) 박휘락,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5년)과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의 적정성 여부」, 외교부, 2015.

14) 유준형,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체제 전환 관련 개선 방안연구 결과 보고서」(국회 외통위·국방위 앞 제출).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고¹⁵⁾, 현재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제도에서 총액형 제도의 단점인 투명성과 책임성이 상당 부분 보완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있음.¹⁶⁾

한편, 정부는 제12차 특별협정 이행약정(제8절)을 통해 한미가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을 통해 ‘대안적 체제(즉, 소요형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공동 평가를 포함한 제도개선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한미 간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률 산정 문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률 산정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¹⁷⁾을 모두 포함한 총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없음.

15) 우리 방위비 분담금 제도는 ▲현물지원체제의 전환 ▲분담금 배정에 대한 공동 검토·평가 ▲사업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우리측 참여 강화를 통해 그간 투명성·책임성을 대폭 강화해왔다는 것이 정부 설명임.

16) 일본 역시 소요형 결정방식 하에서 급격한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을 도입하는 등 분담금 제도에 총액형의 특성을 가미하고 있어 두 제도는 일정부분 수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임.

17) 대한민국 국방부, 「2020 국방백서」, 2020, p.167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음.

- 직접지원: 정부지출을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형태의 지원

ex)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 미 통신선·연합 C4I체계 지원

- 간접지원: 정부지출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주한미군에 재정·자원 절감효과를 발생시키는 형태의 지원.

ex) 각종 세금 면제 및 감면

이는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구성항목과 그 구체내역, 우리 정부의 직·간접 지원 내역의 인정범위 등에 대한 한·미 정부 간 입장이 상이하여,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미비한 실정에서 기인하는 것임.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률 산정 관련 구체내역을 지속 문의하는 한편, 주한미군에 대해 부담하는 직·간접 비용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임.

<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

(단위: 억 원)

구분	분류	세분	항목	2021년
직접지원	국방예산	방위비분담금	인건비(5,598), 군사건설(4,368), 군수지원(1,867)	11,833
		방위비분담금 외	미 통신선·연합 C4I체계 사용	210
			카투사 병력지원(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지원비)	95
			기지정비 및 이전 관련 비용*	169
			부동산 지원	2,789
	국방예산 외 지원	기지주변 정비 비용(주변 도로사업, 지역개발)	5,917	
직접지원 합계				21,013
간접지원	기회 비용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10,739	
		카투사 기회 비용	904	
		훈련장 사용 지원	337	
	면제 및 감면 비용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 면제	1,247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97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93	
간접지원 합계				13,417
총계				34,430

* 기지정비 및 이전 관련 비용: 반환기지 내 구 시설물 철거 및 환경정화비용,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용역 등

※ 자료: 대한민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 p.367

다만,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21년을 기준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적어도 약 3.4조원 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1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약 3배 정도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직·간접지원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임.

따라서 정부는 직·간접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직접지원 이외의 간접지원을 통해서도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왔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 지원 방식(제3조)

□ 항목별 지원 방식의 타당성

특별협정 제3조는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로 인건비 항목은 현금 지원, 군수비용 항목은 현물 지원, 군사건설 항목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건설 항목은 지난 제10~11차 특별협정과 같이 미측이 직접 수행하는 설계와 시공감리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최대 12%)을 제외하고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3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은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에 사용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2월 1일 이전, 4월 1일 이전, 그리고 6월 1일 이전에 지급된다. 군사건설 지원분의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비는 각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연도 말에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그러한 지원분은 이 협정의 이행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차후 연도들로 이월된다.	Article III The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cash, and the Logistics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in-kind contributions. ROKFC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cash and in-kind contributions. Cash contributions for ROKFC shall be for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Each year's Labor Cost Sharing payments shall be made in three equal payments on or before February 1, April 1, and June 1 of that year. The costs of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for ROKFC contributions shall be paid on March 1 of each year. If in-kind contributions remain at the end of the year, those contributions shall roll over to subsequent years unless specified otherwise in the Implementation Arrangement.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의 최소화를 위해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make their utmost efforts, including establishment of procedures, to minimize unexecuted contributions.

한편, 특별협정 제3조는 인건비 분담금을 연 3회 균등 분할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지급 시기를 현행 4월 1일, 6월 1일, 8월 1일에서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로 조정함으로써 2개월씩 앞당기도록 하였음.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는 미 국내법 상의 對의회 통보절차 요건이 신설되어 미측이 인건비 지급 시기 조정을 요청하여 반영된 것임. 이는 특별협정 상 인건비 지급 시기와 미 국내법 상 절차적 요건을 조화시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적기에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을 가능케 하려는 조치로 보임. 한편, 인건비 외에 군사건설 지원분 중 현금 지원분 지급 시기는 제10~11차 특별협정 내용을 유지함.

또한, 제3조는 연도 말에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그러한 지원분을 ‘차후 연도들(subsequent years)’로 이월되도록 함. 지난 10~11차 특별협정 상 해당 조항은 현물 미지급금이 ‘다음 연도(the next year)’로 이월되도록 기술되어 있었음. 이러한 개정은 실제 우리 예산 편성 절차 고려 시 미지급금의 이월은 차기 연도 배정액에 자동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연도 1월 예산회계 결과를 통해 미지급금 금액을 확정된 후 차차기 연도 이후 배정액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명확화한 것임.

□ 방위비 분담금 미지출 현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물로 지원되는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항목에서 미지출 지원분이 발생하는데, 2023년 12월 말 기준 군사건설 미지출 현물 지원분 1조 6,476억원, 군수지원 항목 미지출 현물지원분이 2,675억원임.

이에 대해 정부는 군사건설 항목 미지출 현물지원분은 협정에 따라 미측에 지어주기로 한 시설 공사의 계속사업비 잔액으로서, 사업의 진행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군수지원 항목 미지출 현물지원분은 배정 합의액 대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차액으로, 이는 제11차 협정 공백('20.1월~'21.8월)이 발생하고 2021년도와 2022년도의 분담금이 크게 증액됨에 따라 확대되었음. 이에 대해 정부는 제11차 특별협정 발효 이후 예산편성 시 방위비 분담금 군수지원 분야 배정 합의액 외에 미지출금을 추가로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함.

□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관련 문제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은 과거 군사건설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던 시기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에서 약 2,571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주한미군 측에 남아 있음.

미측이 보유한 미집행 현금 규모는 2008년 10월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시작 당시 약 1조 1,193억원에서 2023년 12월 기준, 약

2,571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제8차 특별협정에서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 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¹⁸⁾

<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현황 >

기준 시점	미집행 현금 규모
2008년 10월	1조 1,193억원
2012년 9월말	7,611억원
2013년 3월말	7,380억원
2013년 8월말	7,111억원
2014년 1분기	5,140억원
2015년 1분기	3,425억원
2016년 1분기	2,883억원
2017년 1분기	2,883억원
2018년 1분기*	2,884억원
2019년 4분기	2,814억원 (256백만\$)
2020년 4분기	2,540억원 (231백만\$)
2021년 4분기	2,253억원 (197백만\$)
2022년 4분기	2,571억원 (199백만\$)
2023년 4분기	2,571억원 (198백만\$)

※ (2008~2013) 국방부가 주한미군사에 요청하여 4차례 제출받은 자료

※ (2014~2018) 9차 협정에 따라, 국방부가 매년 주한미군사로부터 제출받은 미집행현금보고서

※ (2019-2020) 10차 협정에 따라, 국방부가 매년 주한미군사로부터 제출받은 미집행현금보고서

※ (2021-2023) 11차 협정에 따라, 국방부가 매년 주한미군사로부터 제출받은 미집행현금보고서

* 군사건설 사업 집행 간 발생한 일부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상승에 따라 원화도 상승

※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사가 가급적 조기에 해당금액을 소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 측은 이에 대해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나가면서 우리 측에 관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18) 방위비 분담금 군사건설 항목 소요 비용은 과거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2009년 30%, 2010년 60%, 2011년부터 88%로 현물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온바, 2019년 3월 현재, 현물지원 비율이 88%, 현금지원(설계·감리비용) 비율이 12%임.

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안녕 증진 노력 등(제5조)

제12차 특별협정 제5조는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함. 제11차 특별협정 타결 지연으로 발생한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¹⁹⁾가 재발되지 않도록 11차 특별협정 내 추가된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협정 종료 후 1년 동안 협정 마지막 연도의 인건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속 유지되고 있음. 이 조항은 추후 설사 협정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를 우선 지급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협정 공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5조 당사자는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 협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이 협정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인건비 분담 배정 금액을 한도로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 분담 지원분이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다루는 후속	Article V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endeavor to enhance the welfare and well-being of the Korean national workforce of U.S. Forces Korea. Notwithstanding Article VII of this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 may provide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upon a written request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a period of up to one year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d up to the allocated amount of Labor Cost Sharing for the last year in which this Agreement is in force. The Parties

19) 당시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2020.4.29. 본회의 가결)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협정에 명시되는 대한민국의 지원분 총액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의도한다.	intend for any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provided under this Article to constitute a part of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identified in a subsequent agreement addressing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한편, 정부는 이번 12차 특별협정 이행약정을 통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SOFA 합동위가 퇴직연금제 제안을 제시할 경우,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함. 현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받고 있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문제는 SOFA 노무위원회와 합동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나, 퇴직연금제 도입시 운용 수수료 지불 문제가 SOFA 유관 위원회 차원의 협의에 주요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해온 바 있음. 제도개선합동실무단 차원에서 향후 퇴직연금제 운용 수수료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은 SOFA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촉진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고 보임.

한편, 이번 제12차 특별협정 이행약정은 제11차 이행약정에서 합의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최소배정비율 85%와 추가 2% 노력 규정은 계속 유지하고 있음.

마)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제6조)

특별협정 제6조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한·미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1차 특별협정에서는 합동실무단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의장을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국장급 인사로 종전보다 직급 상향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 및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계당국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6조 당사자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하며, 합동실무단은 공동의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대한민국 외교부 및 국방부, 미합중국 국무부 및 국방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사자의 관계당국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다. 합동실무단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이행약정에서 정한다.	Article VI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current Special Measures Agreement system,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operate a joint working group that shall be co-chaired b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Forces Korea at the Director-General level and meet at the request of the co-chair. When deemed necessary by both Parties, representatives from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State and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y attend. The specific details pertaining to the mission and operation of the joint working group shall be determined in the Implementation Arrangement.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11차 특별협정 발효(2021년 9월) 이후부터 국장급 인사²⁰⁾를 중심으로 제도개선합동실무단을 운영하였으며, 최소 연 2회 합동실무단을 소집토록 한 이행약정에 따라 '21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하여 총 5회 개최²¹⁾함.

정부는 이번 12차 특별협정 이행약정을 통해, 합동실무단의 구체 과제로서 '대안적(즉, 소요형) 체제로의 전환'과 '특정시설 제공 방안'에 대한 한미 공동 평가를 포함함.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는 한미 양측이 이러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공동평가를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는 것임. 아울러, 정부는 제도개선합동실무단은 이 두 가지 의제 외에도 한미 양측이 제안하는 어떠한 사안도 의제로서 상정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20)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을 공동의장으로 하였음.

21) '21년은 협정 발효시기 감안 1회, '22년 2회, '23년 2회 개최, '24년은 제12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24.4~10월) 중 한미 간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였는바 별도 개최하지 않음

바) 유효기간과 제11차 특별협정과의 관계(제7조)

□ 유효기간의 적정성

협정 제7조는 동 협정이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7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외교경로를 통해 서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협정은 나중의 서면 통보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Article VII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their respective domestic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and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date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with effect from January 1, 2020.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25, unless extended by mutual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정부는 5년의 유효기간이 예산 수립·운용에서의 예측 가능성 제고, 동맹국 간 빈번한 분담금 협상에 따른 부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²²⁾하여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함. 협정의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2019.3., p.27

국회는 그동안 협정 유효기간이 길게 책정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협상이 부재하여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주한미군 감축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해 온 바 있음. 또한 외교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2015.4.)는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협상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갈등현상 증폭 여부, △협상에 따른 행정소요의 과다 여

길 경우 국회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는 측면도 제기될 수 있으나, 10차 특별협정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8차 특별협정 이후 5~6년의 유효기간을 지속 유지해온 바 있음. 협정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2020~2021년 발생한 협정 공백 사태 등도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협정 유효기간 5년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제1차~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유효기간 비교 >

차수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유효기간	3년 (91-93)	2년 (94-95)	3년 (96-98)	3년 (99-01)	3년 (02-04)	2년 (05-06)	2년 (07-08)	5년 (09-13)	5년 (14-18)	1년 (19)	6년 (20-25)

□ 11차 특별협정과의 관계

11차 특별협정을 포함한 과거 대부분의 특별협정이 직전 특별협정 유효기간 종료 후 타결됨으로써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제12차 특별협정은 제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타결되었음. 이에 따라 12차 특별협정 제7조는 제11차 유효기간 종료(2025년 12월

부, △방위비 분담금 예측 가능성 여부, △주한미군 규모의 변화 여부, △주한미군의 군사건설 변화 여부, △미국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향후 분담금 증액 압박 여부 등이라고 판단하고, 변동요인이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고, 주한미군이 감축되지 않는 한, 5년 정도의 장기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음.

31) 시까지는 제12차 특별협정이 발효하더라도 제11차 특별협정의 조건들이 적용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두 특별협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음.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7조 이 협정의 발효는 2021년 4월 8일에 서명되어 만료 시까지 유효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rticle VII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terms of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igned on April 8, 2021, which remains in force until its expiration.

정부는 제12차 특별협정 제2조 상 이 협정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원분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사 이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제12차 특별협정과 제11차 특별협정 간 적용에 대해 오해의 여지는 크지 않으나, 명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이러한 별도의 규정을 추가하였다고 설명함.

금번 12차 특별협정 이전에는 협상이 지연 타결되어 소급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제11차 특별협정 만료 전에 제12차 특별협정이 타결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앞으로도 정부는 대미 협상, 국회 비준 절차, 국내에서의 예산안 심사 일정을 고려하고 동 절차에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임.

3)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보장

이번 제12차 특별협정은 현행 제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회에 그 비준동의를 위해 제출됨으로써,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를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은 국회의 본질적인 권한으로서,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도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상을 적기에 개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제1차~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비준동의 제출 지연 현황 >

연도 \ 일지	서 명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국회 비준동의	발 효
제1차 협정 (1991-1993)	1991. 01. 25.	1991. 01. 25.	1991. 02. 08.	1991. 02. 21
제2차 협정 (1994-1995)	1993. 11. 23.	1993. 12. 07.	1993. 12. 17.	1994. 01. 01.
제3차 협정 (1996-1998)	1995. 11. 24.	1995. 11. 24.	1995. 12. 01.	1996. 01. 01.
제4차 협정 (1999-2001)	1999. 02. 25.	1999. 03. 08.	1999. 03. 08.	1999. 01. 01.
제5차 협정 (2002-2004)	2002. 04. 04.	2002. 04. 09.	2002. 04. 19.	2002. 01. 01.
제6차 협정 (2005-2006)	2005. 06. 09.	2005. 06. 09.	2005. 06. 29.	2005. 01. 01.
제7차 협정 (2007-2008)	2006. 12. 22.	2006. 12. 29.	2007. 04. 02.	2007. 04. 02.
제8차 협정 (2009-2013)	2009. 01. 15.	2009. 01. 15.	2009. 03. 02.	2009. 03. 05.
제9차 협정 (2014-2018)	2014. 02. 02.	2014. 02. 07.	2014. 04. 16.	2014. 06. 18.
제10차 협정 (2019)	2019. 03. 08.	2019. 03. 12.	2019. 04. 05.	2019. 04. 05.
제11차 협정 (2020-2025)	2021. 04. 08	2021. 04. 13	2021. 08. 31	2021. 09. 01
제12차 협정 (2026-2030)	2024. 11. 04	2024. 11. 05	-	-

4) 제11차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첨부²³⁾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은 다음과 같음.

< 제11차 비준동의 당시 국회 부대의견 및 이행상황 >

국회 부대의견		이행상황
①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다른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	✓ 국방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대체
②	준비태세(Readiness)와 같은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할 것	✓ 기존 특별협정 지원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을 유지하여, 추가 항목을 신설하지 않음.
③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 관련, 외교부-국방부 공동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제도개선 적극 추진	✓ 외교부-국방부 공동 연구용역 보고서 국회 보고 완료('24.10.4.) ✓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합의
④	美 미집행현금 집행 현황과 미집행 현물 지원분의 합리적 해소 방안 국회 보고	✓ 미집행현물 해소 방안 관련 국회에 既 보고(국방부, '23.10월)
⑤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 폐지	✓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됨을 명시하여,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
⑥	직간접 비용 포함, 한미 분담률 산정 기준을 구축하고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	제12차 SMA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해 부담하는 직·간접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동맹 기여에 대해 설명 / 이에 대한 한미간 이해와 평가를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 도출

23) 【참고자료5】 참조.

⑦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해 「특별조치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 충실 작성, 한미 양측이 제공하는 문서를 매년 국회 외통위 보고	✓ 연례 집행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매년 보고 중 (국방부, '22.12월, '24.1월)
⑧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직접 고용제도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실시	소관 부처가 국회에 보고 예정
⑨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현황과 특별협정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할 것	소관 부처가 국회에 보고 예정
⑩	국방부는 현금지원분의 미집행 발생 여부와 그 내역을 매년 8월 결산 심의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 현금지원분의 미집행 발생 여부를 매년 보고 중(국방부, '22.12월, '23.10월)

※ 자료: 외교부

□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

국회는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부대의견을 통해,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지속되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음. 정부는 이러한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역외자산 정비지원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한 한미 국방당국 간 합의²⁴⁾에 따라, 역외 자산 정비 지원 규모를 축

24)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 하에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 사업의 예외사항으로 실시되어온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간의 이행합의서」 제1장 3., '19.10.22.)

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설명함.

< 11차 협정기간(2020 ~ 2024년) 역외(일본) 장비 정비 지원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평 균
지원 금액	163	0	0	87	0	50

※ 자료: 국방부

아울러, 이번 제12차 특별협정 이행약정은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됨을 명시함으로써, 역외자산 정비지원을 궁극적으로 폐지하였음. 이는 주한미군의 유지 비용을 분담하는 특별협정 집행의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성과라고 보여짐.

5) 종합의견

정부는 이번 제12차 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 협정 기간 중 분담금 증가율, 제도개선 등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들을 거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번 제12차 특별협정은 기존 방위비 분담금 항목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적용토록 하고 상한선을 제도입하였는데, 이는 중요한 성과라고 판단됨. 이는 제12차 특별협정 기간 중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을 이전 협정에 비해 상당히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제12차 특별협정에서는 그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하여, 향후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정부의 제12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제4차 특별협정 이후 처음으로 현행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이는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확정권을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인 이행을 담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12차 특별협정의 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필요성,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특별협정 비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미집행 현금과 미지출 현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제도개선합동실무단에서 소요형 전환 문제를 포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위원회와 협의하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아울러,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새로운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협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제1차~제11차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 변화

【참고자료 2】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경과

【참고자료 3】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법제처 심사 결과

【참고자료 4】 주한미군 한국근로자 인건비 및 분담 현황

【참고자료 5】 제11차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시 부대의견

【참고자료 1】 제1차~제11차 방위비 분담금 규모 결정방식 변화

(단위 : 억 원)

구 분		분담금 규모 결정방식	분담금 규모	누 계
제1,2차 특별협정	1991	- 주둔비용 1/3분담 목표, 점진 증액 - 매년 분담금 협상 실시	1.5억달러(1,073)	-
	1992		1.8억달러(1,305)	2,378
	1993		2.2억달러(1,694)	4,072
	1994		2.6억달러(2,080)	6,152
	1995		3억달러(2,400)	8,552
제3차 특별협정	1996	1996년 분담금: 3.3억달러(95년 총액 대비 0.3억달러 증액, 10% 증가) - 전년도 분담금 기준(달러화) 매년 10% 증액 합의 - 최초로 3개년 분담금 일괄 결정 (단, '98년은 외환위기로 삭감 조정)	3.3억달러(2,475)	11,027
	1997		3.63억달러(2,904)	13,931
	1998		3.14억달러(4,082)	18,013
제4차 특별협정	1999	1999년 분담금: 1.41억달러+2,575억원(98년 총액 대비 8% 증가) - 인건비와 군수지원의 일부를 원화로 지급(분담금의 57%) 00년과 01년 분담금은 실질 GDP 변동률과 소비자물가 지수변동률과의 합계를 적용하여 산출	1.41억달러+2,575억원 (4,411)	22,424
	2000		1.55억달러+2,825억원 (4,684)	27,108
	2001		1.67억달러+3,045억원 (4,882)	31,990
제5차 특별협정	2002	2002년 분담금: 0.59억달러+5,368억원(01년 총액 대비 25.6% 증가) - 기간내 인상률은 전년도 분담금에 8.8%와 전전년도 GDP 디플레이터와의 합계를 적용하여 산출 - 군사시설건설 중 현물사업 5% 확보 - 원화 지급 비율 확대	0.59억달러+5,368억원 (6,132)	38,122
	2003		0.65억달러+5,910억원 (6,686)	44,808
	2004		0.72억달러+6,601억원 (7,469)	52,277
제6차 특별협정	2005	2005년 분담금: 6,804억원(04년 총액 대비 8.9% 감소, 주한미군 감축 등을 감안) 2005년부터 분담금을 전액 원화 지급	6,804	59,081
	2006		6,804	65,885
제7차 특별협정	2007	2007년 분담금: 7,255억원(06년 총액 대비 451억원 증액, 6.6% 증가) 2008년 분담금은 2007년도 분담금에 2006년 물가상승률(2.2%) 반영 - 군사시설건설 중 현물사업 비율 10% 상향 조정	7,255	73,140
	2008		7,415	80,555
제8차 특별협정	2009	2009년 분담금: 7,600억원(08년 총액 대비 185억원 증액, 2.5% 증가) 2010~2013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상한선 4%) 반영 - CDIP을 군사건설 항목으로 통합 「군사건설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채택 - 현물 비율 '09: 30% → '10: 60% → '11부터: 88%	7,600	88,155
	2010		7,904	96,059
	2011		8,125	104,184
	2012		8,361	112,545
	2013		8,695	121,240

제9차 특별협정	2014	o 2014년 분담금: 9,200억원(13년 총액 대비 505억원 증액, 5.8% 증가) o 2015~2018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상한선 4%) 반영 o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채택	9,200	130,440
	2015		9,320	139,760
	2016		9,441	149,201
	2017		9,507	150,158
	2018		9,602	159,760
제10차 특별협정	2019	o 2019년 분담금: 1조389억원(18년 총액 대비 787억원 증액, 8.2% 증가)	10,389	170,149
제11차 특별협정	2020	o 2020년 분담금: 1조389억원(19년 총액 동결) o 2021년 분담금: 1조1,833억원(20년 총액 대비 1,444억원 증액, 13.9% 증가) o 2022~2025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년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증가율 반영	10,389	180,538
	2021		11,833	192,371
	2022		12,472	204,843
	2023		12,896	217,739
	2024		13,463	231,202
	2025		14,028 (정부안)	245,230

【참고자료 2】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경과

□ 주요 경과

-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2020년~2025년간 유효)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고위급 회의를 2024년 4월부터 진행
 - 1차(4.23~25, 하와이), 2차(5.21~23, 서울), 3차(6.10~12, 워싱턴), 4차(6.25~27, 서울), 5차(7.10~12, 서울), 6차(8.12~14, 워싱턴), 7차(8.27~29, 서울), 8차(9.25~27 / 10.1~2, 서울)
- 2024년 10월 2일 협상 최종 타결, 10월 3일 가서명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여, 2024년 11월 4일 외교장관과 주한미국대사 간 정식 서명

□ 양측 협상 대표단

○ 우리측

- 수석대표 : 이태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외교부)
-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관계관 등

※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처음 체결한 이래 2004년까지 개최된 5차례의 협상은 국방부가 주관하였고, 제6차 협정('05-'06)에 관한 협상부터 외교부가 주관

○ 미 측

- 수석대표 : 린다 스펙트(Linda Specht)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 등

【참고자료 3】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법제처 심사 결과

1. 주요 내용

- 이 협정안은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모두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고 함)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것으로서,
 -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데,
 - 이 협정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해당 여부

- 이 협정안은 우리나라가 이 협정의 유효기간(2026년 ~ 2030년) 동안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면서(협정안 제1조), 2026년 지원분을 1조5,192억원으로 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증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협정안 제2조) 향후 2030년까지 약 8조원 상당의 국가 재정을 부담하게 되므로,
 -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협정안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검토의견

- 이 협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4】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및 분담 현황

구분	근로자 수 (명)	인건비 총액 (억원)	한측 부담액 (억원)	분담비율	임금 상승률	주한미군사 한국인근로자 평균 인건비 (백만원)	일반근로자 평균 인건비 (백만원)
2014	8,617	4,862	3,430	70.6%	1.7%	56.4	34.8
2015	8,730	5,035	3,490	69.3%	3.8%	57.7	35.9
2016	8,918	5,312	3,630	68.3%	3.0%	59.6	37.3
2017	8,985	5,524	3,655	66.3%	3.0%	61.5	38.5
2018	8,923	5,716	3,710	64.9%	2.6%	64.1	40.5
2019	8,642	5,641	5,005	88.7%	1.8%	65.3	41.9
2020	8,505	5,407	2,956	54.7%	2.8%	63.6	42.3
2021	8,435	5,716	5,598	96.8%	1.0%	67.8	44.3
2022	8,351	5,835	5,084	87.1%	2.2%	69.9	46.4
2023	8,341	6,012	5,130	85.3%	4.1%	72.1	47.6

* 자료: 국방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 임금상승률은 Pay-cap 규정하에서 한국인 노조와 주한미군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

* Pay-cap 규정이란, 해외 미군 주둔국 직원의 임금 인상률은 미국 연방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주둔국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 중 높은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美 국방비 예산법 8002장)

※ 일반근로자 평균인건비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를 바탕으로 전체 산업과 근로자 전체에 대한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계산

【참고자료 5】 제11차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시 부대의견

첫째, 과거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둘째, 정부는 차기협상에 있어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예외적 분담이라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기본취지를 살려 준비태세(Readiness)와 같은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과 관련해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교부·국방부 공동으로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넷째, 정부는 주한미군사에 남아있는 미집행현금이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미집행 현물지원분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다섯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관련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그동안 한미 군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지속되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

여섯째,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총주둔비용을 기초로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부담하는 직·간접 비용을 포함한 양측의 분담률 통계자료 산정 기준을 구축하고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일곱째, 방위비분담금의 적절한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10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행약정 제6절에서 규정한 「특별조치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한편, 이행약정 및 부속합의에서 한미 양측이 제공하는 문서를 매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할 것,

여덟째,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 필요성과 관련하여 근로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고용안정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아홉째,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협정들을 체결한 지 20년이 경과하는 2024년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현황과 분담금 특별협정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24년 8월 결산심의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열째, 군사건설 12% 현금 지원인 설계·감리비의 미집행분을 차년도 현금 지원분에서 삭감하기로 합의한 바, 정부는 현금지원분의 미집행 발생 여부와 그 내역을 매년 8월 결산심의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4. 대체토론의 요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내용인 만큼 방위비 분담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투명성 확보, 특히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윤후덕 위원)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정부 측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음.

첫째, 정부는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에서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위비분담금 집행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둘째,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셋째, 정부는 매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 및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을 장려하며 고용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사와 적극 협의할 것,

넷째, 정부는 특별조치협정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할 것,

이상 총 4건의 부대의견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
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에 정부가 비준하도록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붙임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
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이후 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중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하여,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공약이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별 조치를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이하 “군사건설”이라 한다)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협정의 이행은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하도록 의도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사령부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이하 “이행약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당사자는 이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2조

이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을 결정한다. 2026년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1조5,192억원이다. 2027년, 2028년, 2029년 및 2030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2027년은 2025년, 2028년은 2026년, 2029년은 2027년, 2030년은 2028년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증가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또한,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3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은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에 사용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 분담금은 3회 균등 분할하여 해당 연도의 2월 1일 이전, 4월 1일 이전, 그리고 6월 1일 이전에 지급된다.

군사건설 지원분의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비는 각 연도의 3월 1일에 지급된다.

연도 말에 현물 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그러한 지원분은 이 협정의 이행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차후 연도들로 이월된다.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의 최소화를 위해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4조

현물 지원분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세금을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 보급품, 장비 또는 용역에 대해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 지불은 비용 분담 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5조

당사자는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 협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이 협정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인건비 분담 배정 금액을 한도로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 분담 지원분이 인건비 분담 지원분을 다루는 후속협정에 명시되는 대한민국의 지원분 총액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의도한다.

제6조

당사자는 현행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의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하며, 합동실무단은 공동의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대한민국 외교부 및 국방부, 미합중국 국무부 및 국방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

한되지 않는 당사자의 관계당국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다. 합동실무단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이행약정에서 정한다.

제7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외교경로를 통해 서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협정은 나중의 서면 통보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의 발효는 2021년 4월 8일에 서명되어 그 만료 시까지 유효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합의된 절차에 따라 매년 선정되었으나 이 협정 종료일에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모든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 또는 군사건설 사업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당사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자가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되고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11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have agreed to take the follow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igned at Seoul on July 9, 1966, as amended, which sets forth the principles on the sharing of expenditures incident to the maintenance of the United States (U.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cognition of the goal of a strong and mutual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of America alliance:

Article I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ar,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as a special measure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a part of the expenditures associated with the stationing of the U.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ategorized into Labor Cost Sharing, Logistics Cost Sharing, and Republic of Korea-Funded Constru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KFC").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 separate Implementation Arrang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 Forces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Arrangement") which is intended to enter into force on the same date as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make utmost efforts to enhanc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f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II

This Agreement shall determine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26 through 2030. The contrib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2026 is 1.5192 trillion Korean Won. The 2027, 2028, 2029, and 2030 contributions shall be determined by increasing the contribution of the previous year by the inflation rate (Consumer Price Index)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using the 2025 rate for the 2027 contribution, the 2026 rate for 2028, the 2027 rate for 2029, and the 2028 rate for 2030. Further, the inflation rate used for any given year shall not exceed five (5) percent.

Article III

The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cash, and the Logistics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in-kind contributions. ROKFC contributions shall consist of cash and in-kind contributions. Cash contributions for ROKFC shall be for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Each year's Labor Cost Sharing payments shall be made in three equal payments on or before February 1, April 1, and June 1 of that year.

The cost of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for ROKFC contributions shall be paid on March 1 of each year.

If in-kind contributions remain at the end of the year, those contributions shall roll over to subsequent years unless specified otherwise in the Implementation Arrangement.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make their utmost efforts, including establishment of procedures, to minimize unexecuted contributions.

Article IV

All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vided as part of the in-kind contributions shall be exempt from Republic of Korea taxes or provided on an

after-tax basis. Such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and services procur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exempt from individual consumption taxes and value added taxes. In the case of value added taxes, the zero rate shall be applied. If taxes are levied against any such materials, supplies, equipment, or services, payment of such taxes shall not be made from cost-sharing funding.

Article V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endeavor to enhance the welfare and well-being of the Korean national workforce of U.S. Forces Korea.

Notwithstanding Article VII of this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 may provide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upon a written request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a period of up to one year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nd up to the allocated amount of Labor Cost Sharing for the last year in which this Agreement is in force. The Parties intend for any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provided under this Article to constitute a part of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identified in a subsequent agreement addressing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Article VI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current Special Measures Agreement system,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operate a joint working group that shall be co-chair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Forces Korea on behalf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the Director-General level and shall meet at the request of the co-chair. When deemed necessary by both Parties, representatives from the concerned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atte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State and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pecific details pertaining to the mission and operation of the joint working group shall be determined in the Implementation Arrangement.

Article VII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their respective domestic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and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date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through December 31, 2030, unless extended by mutual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terms of the Agreement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igned on April 8, 2021, which remains in force until its expiration.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carrying out of any Logistics Cost Sharing contributions or ROKFC projects that are selected every year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procedures under this Agreement, and that are not fully executed as of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VIII

The Parties may consult on all matters regarding this Agreement through the Joint Committee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Article XXVIII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or through the Joint Cost-Sharing Committee, which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appointed by the Parties.

Article IX

This Agreement may be revised and am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Such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pursuant to the process provided in Article VII.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for the purpose,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Seoul, this fourth day of November 2024,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2026년 지원분은 1조 5,192억원이며, 2027년~2030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대한민국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추후 결정
- 따라서, 현재 기준 지출·총비용의 합계, 연평균 수치는 미정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지출	총 3개 항목 (①인건비 분담, ②군사건설, ③군수비용 분담)	15,192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 × 전전년도 대한민국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지수				미정	미정
	소 계(A)	15,192	미정				미정	미정
수입	-	-	-				-	-
	소 계(B)	-	-				-	-
총 비용(A-B)		15,192	미정				미정	미정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1조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부담 및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됨
2	제2조	우리나라의 지원분은 2026년 1조5,192억원이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증가되고,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3	제3조	인건비 부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군수비용 부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되, 이 중 현금 지원분은 사업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됨
4	제5조	우리나라는 미합중국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 종료 후 최대 1년 동안 이 협정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 인건비 부담 배정 금액을 한도로 인건비 부담 지원분을 지급할 수 있음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1조	실시	
2	제2조	실시	
3	제3조	미 실시	해당연도별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추계 필요
4	제5조	미 실시	대상기간 외의 가정적인 상황에 관한 규정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지원 대상기간: 2026년~2030년(5년간) / 전액 원화 집행
- 2026년 지원분: 1조 5,192억원 / 2027년~2030년 지원분: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대한민국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결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1조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분이 ①인건비 분담 ②군수비용 분담 및 ③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점 반영
 - (인건비 분담)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급료와 후생복지비) 분담
 - (군수비용 분담) 수리 및 정비 용역, 수송용역, 시설유지용역, 차량·장비 및 물자 구입, 기지운영지원 등에 지원
 - (군사건설) 생활관, 창고, 훈련장, 정보작전시설 등 건설 지원
- 제2조에 따라 ▲2026년 지원분은 1조 5,192억원 ▲2027~2030년은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적용하여 증가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서기관	팀장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
박성훈	유명진	이태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훈	02-2100-7851	suhpark09@mofa.go.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국방예산에 반영 추진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15,192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 × 전전년도 대한민국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지수				미정
〈 합 계 〉	15,192	미정				미정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국방예산에 반영 추진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 중앙정부	15,192	전년도 지원분 + (전년도 지원분 × 전전년도 대한민국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지수				미정
○ 일반회계	15,192	상동				미정
〈 합 계 〉	15,192	상동				미정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지원 대상기간인 2026~2030년 동안 매년 국방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해당사항 없음.

Ⅳ.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Ⅴ. 협의사항

○ 재원조달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와 대상기간 중 연도별 지원분 관련 협의

Ⅵ. 작성자

○ 성명

서기관	팀장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표
박성훈	유명진	이태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훈	02-2100-7851	suhpark09@mofa.go.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참고자료)

특별조치협정을 위한 이행약정

전문

이 약정은 2024년 11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하 “특별조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데 사용된다.

이 이행약정의 목적상, 이하에서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국방부(이하 “국방부”라 한다)와 주한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라 한다)를 집합적으로는 “당사자들”로,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고 한다.

제1절

배정액의 포괄적인 검토 및 평가

1.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관련 문서 및 자료를 기초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이하 “방공위”라 한다)를 통해 3개 분담금 항목별[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이하 “군수비용 분담”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이하 “군사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주한미군사의 배정액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2. 필요할 경우, 관련 사안은 추가 심의를 위해 한국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 간 협의에 상정될 수 있다.

3. 주한미군사는 배정 금액의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위해 늦어도 방공위 개최 2주 이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 경우 주한미군사는 배정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가. 인건비 분담 관련 자료는 특별조치협정 재원으로 지원되는 고용원 수, 이들 인원 에 대한 비용 추산치, 고용원 수와 임금의 확인된 변동사항에 관한 설명, 그리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력운영계획서를

포함한다.

- 나. 군사건설 관련 자료는 군사건설 5개년 계획, 해당연도 및 그 다음 연도의 건설 사업목록과 동 사업들과 관련된 미국 국방부 양식(DD) 1391 서류, 그리고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 재원의 미집행분을 포함한 분기별 및 연간 현금 집행보고서를 포함한다.
- 다. 군수비용 분담 관련 자료는 개별 사업목록, 연도별 집행 계획 및 5개년 추정 계획을 포함한다.

4. 비용분담 항목별 배정액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가. 주한미군사는 집행연도의 전년도 3월 15일까지 3개 비용분담 항목별 추정되는 배정 금액을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 나. 각 비용분담 항목별 배정액 고려시, 방공위는 인건비 분담부터 배정액의 검토와 평가를 시작한다.
- 다. 주한미군사는 인건비 분담의 최종 배정 금액을 가장 먼저 결정한다.
- 라. 주한미군사는 위에서 언급된 방공위의 검토 및 평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연도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최종 배정 금액을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제2절

지원 항목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은 원화로 지급되며, 다음 항목들에 배분된다.
(가) 인건비 분담(제3절), (나) 군사건설(제4절) 및 (다) 군수비용 분담(제5절).

제3절

인건비 분담

- 1. 인건비 분담 지원분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2. 주한미군사는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 분담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소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않는다.

3. 군사상 소요로 인해 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한미군사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4. 한국이 제공하는 인건비 분담 지원분은 한국 내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후생복지비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연금 제도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경우,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제6조에 따른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에서 특별조치협정으로 지원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재원 마련 사안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5퍼센트를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한다.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7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주한미군사는 3월 1일 이전에 전년도의 연간 집행보고서를 한국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계획예산관)에 제공한다. 연간 집행보고서는 특별조치협정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고용원 수, 기관별 급여 분배 내역, 급여항목별 급여 분배 내역, 직책별 고용원 분포, 각 급여수준별 고용원 수, 월별 실제 임금 집행 내역, 고용원 수 및 임금수준 변동 설명과 같은 상세 내용을 포함한다.

제4절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군사건설)

1. 군사건설 프로그램은 현금 및 현물 지원 프로그램이다.
2. 한국 국방부가 제공하는 현금과 현물은 군사건설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에만 사용된다.
 - 가.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비는 연간 군사건설 배정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 나. 특정 연도에 배정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 재원은 차기 연도의 군사건설 현금 배정액에서 삭감되며, 이에 따라 군사건설 총 배정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현물 배정액을 현금 감소액만큼 증가시킨다.
 - 다.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 재원은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주한미군사는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를 책임진다. 이 이행약정의 제4절 제8항에 근거한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군사건설 사업의 품질과 군사건설 프로그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시험사업을 개발하고 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범 프로그램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다.
4. 한국 국방부는 사업설계 과정에서 확인되고 발전된 사업 일정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 가. 모든 입찰 차액은 향후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 나. 주한미군사는 설계시방서 및 수용 가능한 계약업체 목록을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 다. 계약업체는 비한국 업체가 이용되어야 하는 특정 시설 건설을 제외하고, 미합중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가 사전에 선별한 계약업체 목록에서 선정된 한국 업체로 한다. 이러한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필요로 인해 요구되며, 이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 공사감독 책임은 주한미군사에 위임된다.

5. 당사자들은 군사건설 지원분이 회관, 골프장, 극장 및 볼링장과 같은 위락 시설들을 건설, 확장, 수리 또는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6. 적용되는 한국과 미국 표준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국산 자재가 사용된다.

7. 당사자들은 기획, 계획, 설계, 계약, 공사 관리 및 품질보증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수의 인력을 군사건설 프로그램 및 사업에 투입한다.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된 과정에 따라 품질보증을 이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여된 과업에 자원을 적절히 제공한다. 이와 관련, 각 연도의 전체 군사건설 현물 지원분의 5.1퍼센트는 한국 국방부의 해당연도 건설사업관리 비용에 사용된다. 당사자들은 각자의 품질보증보고서를 상호 공유한다. 품질보증 과정 및 보고서 공유 관련 세부적인 절차는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다.

8. 당사자들은 군사건설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안들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이하 “합동협조단”이라 한다)을 계속하여 운영한다. 당사자들은 각자 적절한 고위급 인사를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의 공동의장으로 임명하며,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의 공동의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사안들에 관해 만나서 논의한다.

가. 사업 선정

(1) 주한미군사는 군사건설 합동협조단 협의를 위해 집행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한국 국방부에 군사건설 5개년 계획, 해당연도 및 그 다음 연도의 건설 사업목록과 동 사업들과 관련된 미국 국방부 양식(DD) 1391 서류를 제공한다. 집행연도 사업은 5개년 계획에 기초하여 주한미군사에 의해 일차적으로 선정되고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2) 집행연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군사건

설 5개년 계획과 해당연도 및 그 다음 연도의 건설 사업목록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군사적 필요와 공사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5개년 계획과 해당연도 및 그 다음 연도의 사업목록의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 (3)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집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 이전까지 방공위에 상정될 수 있다. 해결되지 않은 경우, 그 사안들은 해결을 위해 집행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까지 한국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상정될 수 있다.
- (4) 집행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5개년 계획과 해당연도 및 그 다음 연도의 건설 사업목록에 대한 협의를 종료한다.

나. 사업수정 관리

- (1) 사업 완료 지원, 추가 비용 발생 감소, 건설 일정 지연 최소화 및 개별 사업 범위의 수정 제한을 위해,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모든 군사건설 사업을 위한 적절한 전략이 준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획득 계획을 검토한다.
- (2) 공사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는 한국 국방부를 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 관여시키며 최종 사업 설계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3) 더 나아가, 불필요한 공사 지연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들은 수정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여 일정 변경이나 비용 증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양 당사자들은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정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와 시간 계획을 준수한다.

다. 계약 및 집행 보고서

- (1) 현물 군사건설 프로그램으로 체결된 모든 공사 계약서 및 수정 계약서의 사본, 분기별 집행보고서와 연간 미지출 보고서는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을 통해 주한미군사에 제공된다.
- (2) 분기별 집행보고서와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이 투입된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에 대한 문서는 모든 사업설계 및 시공감리의 계약

서와 수정 계약서의 사본과 함께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을 통해 한국 국방부에 제공된다.

- (3) 분기별 집행보고서는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이 마련한 양식에 따른다. 집행보고서 및 위 문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다.
- (4)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어떠한 계약 문서와 보고서들이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한다.

라. 집행 문제 해결

- (1) 현물 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양 당사자가 판단하는 사업이나 사업들의 경우, 당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을 통해 협의하고, 사업이나 사업들을 완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마. 긴급 소요

- (1) 최종 건설사업 목록 수립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한미군사는 오로지 군사적 필요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연도 8월 31일까지 최종 건설사업 목록의 일부를 긴급 소요로 대체할 수 있다.

바. 환경

- (1) 환경문제는 중요하다.
- (2) 당사자들은 군사건설 지원분을 환경보호를 고려한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3) 새로운 건설에 군사건설 지원분을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일치하는 현재의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설계 및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사. 기타 문제

- (1) 군사건설 합동협조단은 중요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계약 분쟁, 시위 그리고 군사건설 프로그램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그러한 중요 사안에 대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7 업무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15 업무일 이내에 그 사본을 다른 쪽 당사

자에게 제공한다.

9. 군사건설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따라 미합중국에 공여된다. 이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대한민국에 반환된다.

10. 군사건설 집행에 있어 당사자들의 책임은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다.

가.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발효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이행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이 항에서 언급된 이행합의서는 2019년 7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 기초한 2019년도 현물대한민국지원건설 사업 이행합의서」를 대체하며, 기존 이행합의서는 이 이행합의서로 대체되기 전까지 특별조치협정 및 이 이행약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적용된다.

제5절

군수비용 분담

1. 군수비용 분담 지원분은 현물로 제공된다.

2.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따라,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한국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제공한다.

가. 한미 단일탄약군수체제(SALS-K)

나. 한미 항공탄약 공동관리 양해각서(MAGNUM)

다. 휘발유 기반 연료, 등유 및 윤활유 분배 및 저장

라. 수송 용역

마. 수리 및 정비용역 (한반도 주둔 미군 자산에 적용)

바.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사.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

아. 전쟁예비물자 유지

자. 차량, 장비 및 물자구입, 그리고

차. 시설의 유지 용역 (기존 시설 전체의 철거 또는 개조는 제외)

3. 이 약정에 따른 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이행에 있어 “한국 계약업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그 모회사를 포함하여, 한국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회사로서 그 국내적 지위가 회사 등기부등본 또는 그를 대체하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실체. 모회사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으로 다른 회사의 기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실체로 정의된다. 또는

나.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

4. 당사자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의 개선,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따른 현재 및 향후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 대한 공동 검토 수행 등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안들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을 계속하여 운영한다. 당사자들은 각자 적절한 고위급 인사를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의 공동의장으로 임명하며,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의 공동의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5. 집행연도에 집행할 모든 사업은, 집행연도 전년도 12월 15일 이전까지, 주한미군사에 의해 확정된 후 한국 국방부에 의해 승인된다.

가. 한국 국방부는 원래 사업목록이 집행연도 동안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수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주한미군사는 본래 배정액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변경이 군수지원 항목별 최초 배정액 대비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에서 한국 국방부와 협의한다.

나. 당사자들은 투명한 이행을 위한 사업 수정을 관리하고 군수비용 분담 미집행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사는 (1) 승인된 사업 목록과 (2) 추후 수정 사항

을 매 분기마다 최소 1회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6. 당사자들은 다음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군수비용 분담 사업을 집행한다.

- 가. 주한미군사는 주한미군사가 공고하고 협상한 계약에 기초하여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발주한다.
- 나. 주한미군사는 계약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계약문서 초안을 준비하여 최종 승인과 계약을 위해 한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 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사의 최종 승인 요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라. 이러한 기간 중, 한국 국방부가 승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에서 누락된 문서를 주한미군사에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 요청 시부터 제출까지의 기간은 제외된다.
- 마.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은 한국 국방부의 승인 거절 이후 그 이견을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공위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 바. 주한미군사는 각 사업에 대해 상호 간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된 후 계약업체에 검수증명서를 발급한다.
- 사. 계약업체는 주한미군사에 송장을 제공하며, 주한미군사는 한국 국방부에 검수증명서와 송장 사본을 제공한다.
- 아. 연장 가능한 군수비용 분담 계약의 경우, 주한미군사는 한국 계약업체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매년 한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 자. 어떤 계약업체가 한국 계약업체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업체는 계약된 기간의 사업 수행은 완료하는 것이 허용된다.

7. 한국 국방부는 계약 또는 당사자들이 승인한 별도의 합의가 체결되었으나 사업 연도 12월 31일까지 제공되지 않은 장비, 보급품 및 용역, 또는 사업 연도 12월 1일까지 입찰 공고된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의 재원을 차기 연도로 이월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입찰 공고가 되지 않은 군수비용 분담 잔여 재원은 사업 연

도 12 월 31 일까지 공공요금으로 지출될 수 있다. 입찰 공고란 계약이 광고된 것을 의미한다.

8. 군수비용 분담 합동협조단은 중요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계약 분쟁, 시위 그리고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그러한 중요 사안에 대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7 업무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15 업무일 이내에 그 사본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9. 군수비용 분담 집행에 있어 당사자들의 책임은 별도의 이행합의서에 규정된다.

가.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발효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이행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이 항에서 언급된 이행합의서는 2022년 4월 1일 서울에서 서명된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간의 이행합의서’를 대체하며, 기존 이행합의서는 이 이행합의서로 대체 또는 종료되기 전까지 특별조치협정 및 이 이행약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적용된다.

제6절 정보공유

1. 정보공유 증진을 위해,

가. 주한미군사가 한국 국방부에 제공하는 자료의 양식은 이 이행약정의 제4절 제8항 다호 3목에서 특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공위에 의한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나. 한국 국방부는 항목별 배정액에 대한 방공위 토의 결과를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

다. 당사자들은 전년도 동안 각자가 개별적으로 집행 책임이 있는 전체 항

목 지원분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를 준비하고, 이를 한미통합국방협의체(이하 “한미통합국방협의체”라 한다) 공동의장에게 집행연도의 차기 연도 4월까지 제출한다.

라. 주한미군사는 미집행된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에 대한 상세 현황보고서를 매년 2회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한국 국방부는 전체 군사건설 현물 지원분 중 지출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에 대한 상세 현황보고서를 매년 1회 주한미군사에 제공한다.

마. 한국 국방부는 위 보고서 및 그 밖의 정기 집행 보고서상의 정보를 군사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

제7절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방공위)는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다.

제8절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

1.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을 계속하여 운영한다.

가.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은 양 당사자의 실무급 인사와 각 당사자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다. 각 측은 적절한 국장급 인사를 공동의장으로 임명한다.

나.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은 특별조치협정 발효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집되며, 특별조치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다.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은 최소한 연 2회 소집된다. 당사자들은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 회의 결과를 매년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 보고한다.

라.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의 의제는 현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각 당사자가 제안하는 사안으로 구성되며, 이는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 및 특정시설 제공 방안에 관한 공동 평가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9절

발효, 유효기간 및 개정

1. 이 이행약정은 이행약정이 발효하기 위한 그들의 국내적인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당사자들 간의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 중 나중의 통보 일자에 발효하여 특별조치협정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2. 이 이행약정의 발효는 2021년 4월 8일 서명되어 만료 시까지 유효한 특별조치협정을 위한 이행약정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이행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될 수 있다.

2024년 11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주한미군사령부를 대표하여

**IMPLEMENTATION ARRANGEMENT
FOR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Preamble

This arrangement shall be used to implement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A”), signed on November 4, 2024.

For the purposes of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ND”)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K”)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FK”) shall be hereinafter referred to collectively as “Parties,” and individually as a “Party”.

Section I

Comprehensive Review and Assessment of Allocations

1. ROK MND and USFK shall comprehensively review and assess the USFK allocation requirements for the three cost-sharing categories (Labor Cost Sharing, Logistics Cost Shar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LCS”), and ROK-Funded Constru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ROKFC”)), based on relevant documents and materials, through the Joint Cost Sharing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JCSC”).
2. When necessary, the discussion may be elevated to the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FK Commander for further deliberation.
3. For the comprehensive review and assessment on the amount of allocations, USFK shall provide relevant materials no later than two (2) weeks prior to the JCSC

session. At this time,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with detailed materials that can serve as a basis for the allocations.

- a. Relevant materials for Labor Cost Sharing include the number of employees to be supported by SMA funds, the estimated cost of these employees, an explanation of known adjustments to the number of employees and pay, and the USFK Korean national workforce staffing authorization documentation.
- b. Relevant materials for ROKFC include the ROKFC Five-Year Plan, the project lists for the current and the following Calendar Years (CYs) with associated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Defense (DD) Form 1391s for those projects, and quarterly and annual cash execution reports including unexecuted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funds.
- c. Relevant materials for LCS include the individual project list, the annual expenditure plan, and the estimated five-year program.

4. As for the allocations for each cost-sharing category, the following procedures shall apply.

- a.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with the estimated amount of allocations for the three cost-sharing categories by March 15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 b. When this allocation for each cost-sharing category is being considered, the JCSC shall review and assess the allocation beginning with Labor Cost Sharing.
- c. USFK shall determine the final amount of allocation for Labor Cost Sharing first.
- d. USFK shall provide the final amount of allocations to the ROK MND by July 31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taking into full consideration the aforementioned review and assessment of the JCSC.

Section II

Contribution Categories

The ROK SMA contribution shall be paid in Korean Won and distributed among the following categories: (a) Labor Cost Sharing (Section III); (b) ROKFC (Section IV); and (c) LCS (Section V).

Section III

Labor Cost Sharing

1. Labor Cost Sharing contributions shall be paid in cash.
2.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MA contribution is provided for Labor Cost Sharing, USFK shall continue to endeavor to enhance the welfare and well-being of its Korean national workforce and shall not terminate employment unless there is just cause or unless such employment is inconsistent with the military requirements of the U.S. Armed Forces.
3. When military requirements make reductions necessary, USFK shall endeavor to minimize employee terminations to the extent possible.
4. Contributions provided by the ROK for Labor Cost Sharing shall be used solely for salaries and benefits of the USFK Korean national employees in the ROK. In order to facilitate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Joint Committee's discussion on a retirement pension plan for the USFK Korean national employees,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consult on the issue of financing the management fee of the retirement pension plan for SMA-funded USFK Korean national employees at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provided by Article VI of the SMA, once a proposal for a pension plan has been formally presented by the ROK-U.S. SOFA Joint Committee.

5. USFK shall use ROK SMA contributions for at least eighty-five (85) percent of the total labor costs of USFK's Korean national workforce, except in cases where the Parties agree through consultation. USFK shall endeavor to use ROK SMA contributions for at least eighty-seven (87) percent or more of the total labor costs of USFK's Korean national workforce.

6. USFK shall provide an annual execution report for the previous year to the Programming and Budgeting Bureau of the ROK MND (Director General of Programming and Budgeting Bureau) no later than March 1. The annual execution report shall include details such as the number of employees that received support from the SMA program, payment distribution by organization, payment distribution by pay category, distribution of employees by position, number of employees for each pay grade, actual payroll execution by month, and explanation of adjustments in the number of employees and pay.

Section IV

ROK-Funded Construction (ROKFC)

1. The ROKFC program is a cash and in-kind contribution program.
2. Cash provided by the ROK MND shall be used only for ROKFC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 a. The costs of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shall not exceed twelve (12) percent of the annual ROKFC allocation.
 - b. A particular year's allocated, but unexecuted,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funds shall reduce the subsequent year's ROKFC cash allocation, thereby equally increasing the in-kind allocation, without reducing the total ROKFC allocation.
 - c.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funds that are in the course of contract procedures shall be regarded as executed funds.

3. USFK shall be responsible for project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The ROKFC Joint Coordinating Group, provided for in Section IV, paragraph 8 of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shall endeavor to develop and decide on trial projects for a pilot program to improve the quality of ROKFC projects and the efficiency of the ROKFC program. The detailed procedure for the pilot program shall be specified in a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

4. The ROK MND awards construction contracts and implements construction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corresponding timeline as identified and developed during project design.

- a. Any bid savings shall be used for future projects.
- b. USFK provides design specifications and a list of acceptable contractors to the ROK MND.
- c. Contractors shall be ROK companies selected from the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Far East District's Pre-Qualified contractor list except for the construction of specific facilities, where non-Korean contractors must be utilized. The use of non-Korean contractors for the construction of specific facilities shall be available only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 ROK MND and USFK agree through consultation that these specific facilities are required due to U.S. military needs and there is no sufficient cash reserve available for that purpose. Responsibility for construction management shall be delegated to USFK.

5. The Parties agree ROKFC contributions cannot be used to construct, expand, repair, or manage recreation facilities, such as clubs, golf courses, theaters, and bowling alleys.

6. Korean materials shall be used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provided they meet applicable U.S. and Korean standards.

7. The Parties shall apply the appropriate number of personnel to the ROKFC

program and projects as necessary to effectively conduct programming, planning, design, contracting, construction administration, and quality assurance. The Parties shall implement quality assurance in accordance with a mutually agreed upon process and shall appropriately resource their tasks assigned under that process. In this regard, 5.1 percent of the total ROKFC in-kind contribution of each CY shall be used for the ROK MND's construction management cost for that CY. The Parties shall share their respective quality assurance reports with each other. The detailed procedures for the quality assurance process and the sharing of reports shall be specified in a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

8.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operate the ROKFC Joint Coordinating Gro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JCG") to review and discuss issues related to the ROKFC program. The Parties each shall appoint an appropriate senior-level official to co-chair the ROKFC JCG, and the ROKFC JCG co-chairs or their representatives should convene meetings as required.

The ROKFC JCG shall meet and discuss the following, but not limited to, areas:

a. Project Selection

(1) By December 31, two (2) years prior to the year of execution,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with a ROKFC Five-Year Plan and the current and following CY project lists with associated project DD Form 1391s for ROKFC JCG consultations. Based on the Five-Year Plan, projects for the year of execution shall be initially selected and prioritized by USFK.

(2) By February 28, one (1) year prior to the year of execution, the ROKFC JCG shall convene to review and discuss the Five-Year Plan and the current and following CY project lists to come to consensus. The ROK MND may suggest adjustments to the Five-Year Plan and the current and following CY project lists considering U.S. military needs and feasibility of construction.

(3) Concerns not resolved through the ROKFC JCG may be elevated to the JCSC no later than March 31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If unresolved, those concerns may be elevated to the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 USFK Commander for resolution no later than April 30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4) By May 31, one (1) year prior to the year of execution, the ROKFC JCG shall conclude consultation on the Five-Year Plan and the current and

following CY project lists.

b. Change Management

(1) In order to support project completion, reduce cost overruns, minimize construction schedule delays, and limit changes in scope of individual projects, the ROKFC JCG shall regularly review acquisition planning to ensure appropriate strategies are in place for all ROKFC projects.

(2) In order to improve construction execution, USFK shall involve the ROK MND throughout the entire design process and the final project design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consultations conducted under that process.

(3) Furthermore, to curtail unnecessary delays in construction, the Parties shall expedite their review of change requests to minimize impact to schedule changes or cost increases. Both Parties will adhere to the established procedures and timelines to process change requests as specified in a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

c. Contracts and Execution Reports

(1) Copies of all construction contracts and contract modifications awarded in the in-kind ROKFC program, quarterly execution reports, and annual unexpended reports shall be provided to USFK through the ROKFC JCG.

(2) Quarterly execution reports and documents concerning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costs funded with the ROKFC cash contributions, including copies of all design and construction oversight contracts and contract modifications, shall be provided to the ROK MND through the ROKFC JCG.

(3) Quarterly execution report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 developed by the ROKFC JCG. Details regarding the execution reports and the aforementioned documents shall be specified in a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

(4) The ROKFC JCG shall determine which contract documents and reports need to be produced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d. Execution Problem Resolution

(1) For a project or projects where it is determined by both Parties that in-kind procedures are not working, the Parties shall consult through the ROKFC JCG in an effort to resolve the problem and take proper actions to

complete the project or projects.

e. Emergent Requirements

(1) When and if a situation occurs that was not envisioned at the time of establishing the final construction projects list, USFK may substitute an emergent requirement into the final construction projects list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based solely on military needs through and until August 31 of the year of execution.

f. Environment

(1) Environmental issues are important.

(2) The Parties shall make strong efforts to use the ROKFC contribution in constructing new facilities that take into account environmental protection.

(3) In applying the ROKFC contribution to new construction,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design and build facilities that meet current environmental standards consistent with the SOFA.

g. Other matters

(1) The ROKFC JCG shall consult and endeavor to address significant issu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tract disputes, protests, and resulting litigation arising from the execution of the ROKFC program.

(2) One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any such significant issues within seven (7) working days of learning of the issue and provide the other Party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within fifteen (15) working days of the receipt of such documents.

9. Facilities constructed under the ROKFC program shall be granted to the United States under Article II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The facilities shall be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y are no longer needed for the purposes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10.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es in the execution of the ROKFC shall be set out in a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

a. The Parties shall make best efforts for this implementing agreement to be

concluded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MA.

- b. The implementing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supersede the Implementing Agreement for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In-Kind Projects under the Calendar Year 2019 Implementation Arrangement for Special Measures Agreement, signed at Seoul on July 3, 2019, which shall continue to apply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SMA and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until superseded.

Section V

Logistics Cost Sharing

1. The LCS contributions shall be provided in-kind.
2. Under the LCS program, to support permanent or temporary stationing of the U.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ROK MND shall furnish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 in categories such as:
 - a. Single Ammunition Logistics System-Korea (SALS-K);
 - a. Munitions Activities Gained through Negotiations under the U.S. and ROK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AGNUM);
 - b. Distribution and storage of petroleum-based fuels, oils, and lubricants;
 - c. Transportation services;
 - d.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applicable to U.S. assets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 e. Certain agreed rents excluding family housing;
 - f. A portion of base operations support (electricity, natural gas, water, and sewage from public utilities; storage; services for sanitation, laundry, bathing, and waste disposal);
 - g. War reserve materiel maintenance;

- h. Vehicle, equipment, and materiel purchases; and
 - i. Facility sustainment services (excluding demolition or renovation of an entire existing facility).
- 3. "Korean Contractor" in implementing the LCS program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 a. An entity, that including its parent, is a domestic corporation under the Korean Corporation Tax Act and whose domestic status is recorded in the Certified Copy of Register or its successor document. A parent is defined as an entity that holds more than 50/100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in another company, as reflected in the Stock Change Certificate; or
 - b. An individual who has Korean nationality.
- 4.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operate the LCS Joint Coordinating Group (JCG) to review and discuss issues related to the LCS program, such as improving methods and procedures to streamline administrative processes, sharing information on current and future projects under the LCS program, and conducting a joint review of contract award and payment procedures. The Parties each shall appoint an appropriate senior-level official to co-chair the LCS JCG, and the LCS JCG co-chairs or their representatives should convene meetings as required.
- 5. All projects to be executed in the year of execution shall be confirmed by USFK and thereafter be approved by the ROK MND no later than December 15 of the year before the year of execution.
 - a. The ROK MND acknowledges there may be changes to the original project list based on unforeseen events during the execution year. USFK shall make best efforts to minimize alterations to the original allocation and shall consult with the ROK MND at the LCS JCG if any alteration exceeds 20% of the amount originally allocated for any LCS sub-category.
 - b. The Parties shall take the following necessary measures to manage adjustments in projects for transparent implementation and in order to minimize the amount of unexecuted LCS contributions. In this regard, USFK shall provide (1) the

approved project list; and (2) subsequent updates to the ROK MND at least once every quarter.

6. The Parties shall execute LCS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details:

- a. USFK shall order the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 based on contracts USFK solicits and negotiates.
- b. USFK makes contract source selection decisions, prepares the contract drafts and submits them to the ROK MND for final approval and award.
- c. The ROK MND shall notify USFK in writing of its decision within fifteen (15) calendar days of USFK's request for final approval.
- d. During this time, if the ROK MND requests any missing documents from USFK required for approval, the period of time between the request and submission of those documents shall be excluded.
- e. The LCS JCG shall meet within seven (7) calendar days upon either Party's request after the ROK MND's denial to consult and resolve the disagreement. If the LCS JCG fails to resolve the disagreement, either Party may request a meeting at the JCSC for resolution.
- f. USFK shall issue the Inspection Report to the contractor after mutually determined periods for each project.
- g. The contractor shall provide USFK with the invoice, and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with the Inspection Report and the copy of the invoice.
- h. In the case of LCS contracts with option years, USFK shall submit supporting documents to the ROK MND annually in order to verify qualification of Korean Contractors.
- i. If it is determined a contractor no longer meets the Korean Contractor definition, the contractor shall be allowed to complete the awarded period of performance.

7. The ROK MND shall exercise a carryover process of funds into the subsequent calendar year for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 that are on a contract or separate

arrangements approved by the Parties, but cannot be delivered by December 31 of the program year, or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 whose solicitation is announced by December 1 of the program year. Remaining unsolicited LCS funds may be expended on public utilities by December 31 of the program year. Solicitation shall mean a contract has been advertised.

8. The LCS JCG shall consult and endeavor to address significant issu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tract disputes, protests, and resulting litigation arising from the execution of the LCS program. One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any such significant issues within seven (7) working days of learning of the issue and provide the other Party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within fifteen (15) working days of the receipt of such documents.

9.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arties in the execution of the LCS shall be set out in a separate implementing agreement.

- a. The Parties shall make best efforts for this implementing agreement to be concluded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MA.
- b. The implementing agreemen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supersede the Implementing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oncerning Logistics Cost Sharing, signed at Seoul on April 1, 2022, which shall continue to apply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SMA and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until superseded.

Section VI

Information Sharing

1. To enhance information sharing:

- a. The format of materials USFK provides to the ROK MND shall be determined through mutual agreement by the JCSC except as specified in

Section IV, paragraph 8.c.(3) of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 b. The ROK MND may share the result of the JCSC's discussion about allocations for the categori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 c. The Parties shall prepare the 'SMA Comprehensive Annual Execution Report' on the contributions across the categories each is respectively responsible for executing during the previous year and submit it to the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KIDD") co-chairs by April of the year after the year of execution.
- d. USFK shall provide the ROK MND with a detailed status report of unexecuted ROKFC cash contributions twice each calendar year. ROK MND shall provide USFK with a detailed status report of unexpended in-kind contributions out of the total ROKFC in-kind contributions once each calendar year.
- e. The ROK MND may share the information from the aforementioned reports and other periodic execution reports with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in a manner that would not compromise military security.

Section VII

Joint Cost Sharing Committee

The JCSC, co-chaired by the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Policy Bureau, ROK MND, and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J-5, USFK, shall meet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Section VIII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1.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of the SMA, shall continue to operate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as follows:

- a.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hall consist of working-level officials of both Parties and representatives of each Party's government. Each side shall appoint appropriate Director-General level officials as co-chairs.
- b.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hall meet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MA and shall be operated until the SMA is terminated.
- c.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hall be convened at least twice a year. The Parties shall report the result of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essions to the KIDD each year.
- d. Agendas of the 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 shall consist of issues proposed by each Party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current SMA syste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joint evaluation of a transition to an alternative system and ways to provide specific facilities.

Section IX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Amendment

1.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dicating that their internal legal requirements for this Arrangement to enter into force have been fulfilled, and shall remain in force for the duration of the SMA.
2.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terms of the Implementation Arrangement for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igned on April 8, 2021, which remains in force until its expiration.
3. This Implementation Arrangement may be revised and amended by mutual cons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DONE at Seoul, this fourth day of November 2024, in duplicate originals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UNITED STATES FORCES
KOREA**